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 — 실제 법률·개정안이 아닙니다. 회사·인물은 모두 가명입니다.

「운송위탁거래법(가칭)」 가상 개정안 요약

한결물류 법무팀 내부 공유용 · 작성 2026년 11월 · 출처: 교육용으로 만든 가상 개정안

1. 개정 개요

· 시행일: 2027년 7월 1일 (가상)
· 대상: 화물 운송을 다른 운송 사업자에게 맡기는(위탁하는) 사업자와 그 위탁을 받는 사업자
· 바뀌는 항목: 6개 (아래 표)

2. 바뀌는 내용

번호	항목	현행	개정안	적용 시점
①	위탁 계약서 보관	운송 시작 전 서면 발급, 3년 보관	운송 시작 전 서면 발급, 5년 보관	시행일 이후 체결·갱신 계약부터
②	운임 지급 기한	운송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지급	운송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지급	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
③	유류비 연동 협의(신설)	(규정 없음)	경유 평균 가격이 계약 때보다 10%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, 한쪽이 요청할 때 30일 안에 운임 조정 협의에 응해야 한다	시행일 이후 체결·갱신 계약부터
④	운행 기록 보관	1년 보관	3년 보관	시행일 이후 체결·갱신 계약부터
⑤	위탁 운전자 안전 교육	연 1회 실시 또는 확인	반기 1회 실시 또는 확인	시행일 이후 체결·갱신 계약부터
⑥	과태료 상한	②④⑤ 위반 시 1,000만 원 이하	②④⑤ 위반 시 3,000만 원 이하	시행일 이후 위반부터

3. 부칙 (가상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·③·④·⑤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위탁 계약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지급 기한에 관한 적용례) ②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위탁 계약에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운송이 끝난 건의 운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4. 법무팀 메모

· 하위 규정(시행령)에서 '경유 평균 가격'을 무엇으로 볼지 정할 예정이라고 함 — 아직 나오지 않음 (확인 필요)
· '반기 1회 실시 또는 확인'에서 협력사가 자체 교육한 것을 우리가 '확인'만 해도 되는지 해석 필요 (확인 필요)

· 이 요약은 원문이 아니다. 판단은 공포된 원문과 법무팀·변호사 검토로 한다.

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 — 실제 법률·개정안이 아닙니다. 회사·인물은 모두 가명입니다.

5. 신구 조문 대비 (가상 · 발췌)

조문	현행	개정안
제9조(위탁 계약서)	② 위탁자는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	② 위탁자는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.
제11조(운임 지급)	① 위탁자는 운송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.	① 위탁자는 운송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.
제11조의2(유류비 연동)	(신설)	① 경유 평균 가격이 계약 체결 당시보다 100분의 10 이상 오르거나 내린 경우 당사자 한쪽은 운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. ③ 경유 평균 가격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4조(운행 기록)	운송 사업자는 운행 기록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	운송 사업자는 운행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제15조(안전 교육)	위탁자는 위탁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그 실시를 확인하여야 한다.	위탁자는 위탁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거나 그 실시를 확인하여야 한다.
제30조(과태료)	제11조·제14조·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제11조·제14조·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※ 조문 번호와 문구는 교육용으로 만든 것입니다. 실제 법령과 무관합니다.